

해 양 수 산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않으면 1차 위반 1,500천원, 2차 위반 3,000천원, 3차 이상의 위반 시 5,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근해어업의 휴업신고, 근해어업의 제한·정지, 근해어업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근해어업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근해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는 [표]와 같이 근해어업을 받은 어선의 매매, 임대차 등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표] 근해어업허가 및 지위승계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10월말
허가 건수	539	551	539	537
지위승계 건수	63	66	83	55

따라서 경상남도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신고 기간 위반시에는 1차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 ○○○○과는 근해통발 어선 ○00○○○의 소유자인 ○○○의 지분 60%를 ○○○이 2014. 12. 31. 매입하여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위한 신고기간 만료일이 4일이 지난 2015. 2. 3.에 신고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근해어업 허가 지위승계 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분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